

05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철학적 해석을
통한 정신전력의 증강에 관한 연구**
: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 김주용(육군 제30기갑여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철학적 해석을 통한 정신전력의 증강에 관한 연구

-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

김주용(Kim Ju-yong)*

〈 목 차 〉

- I. 서 론
- II. 교육내용 속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검토
 - 1. 군복 입은 시민: 시민의 권리와 군인의 의무
 - 2. 국가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 III.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법철학적 해석
 - 1. 공허한 무규정성과 인륜적 자유
 - 2. 현실화된 자유로서의 국가와 국방의 의무
- IV. 인륜적 관점에 기반한 정신전력의 증강
 - 1.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 2. 권리와 의무: 자유의 두 얼굴
- V. 결론 및 제언

* 육군 상병, 제30기갑여단,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석사),
E-mail : wndyd75@naver.com

국문초록

최근 정신전력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여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성에 당면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군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 이중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마리는 군인의 민주의식 신장과 무형전력의 증강이 긍정적 상호연관을 갖는다는 데 있으며, 이를 증강하기 위해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중심 가치의 하나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정신전력교육에서의 활용에 앞서 한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개념 속 군인 신분이 속하는 질서와 시민 신분이 속하는 질서가 서로 이질적이고 상충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복 입은 시민 그리고 자유, 국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을 통해 이 개념의 내적 긴장을 해소하고, 이 개념을 새로운 군 가치의 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활용할 기초를 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개념들에 대한 현 교육과정의 설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Ⅱ). 현 교육과정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군인의 의무의 조화로운 공존에 관한 개략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자의 긴장관계를 온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자유와 국가, 국민 등에 관한 헤겔 법철학의 통찰들을 살펴보고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Ⅲ). 헤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는 단순한 강제 부재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자기규정 능력이다.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층위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그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줄 인륜적 공동체를 요청한다. 인륜성에서 최고의 실체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상의 단위이다. 따라서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는 일, 즉 국가방위는 곧 나와 모두의 자유와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사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서술한다면 앞서 제시되었던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교육과정 내에 서술되어 있는 논증들을 강화할 수 있다(IV). 국가와 국민은 기존에 서술되었던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연관 속에 있으며, 자유, 인권, 복지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역시 특정한 체제의 이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성립과 구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국가가 단순히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 현실화된 자유이며 군인의 의무 역시 자유에 관한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군인의 의무는 시민적 자유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적 자유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주제어 : 군복입은 시민, 해질, 자유, 인륜, 국가

I. 서론

오늘날 정신전력교육은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정상회담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다가 갑자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관계를 급경색시킨 북한과 경제적·문화적 압박을 가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등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상황에 대해 우리 군은 각종 유형전력의 증강과 더불어 빈틈없는 정신적 대비태세를 달성하여 무형전력 또한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박정근, 박영택, 2018: 104-106). 둘째, 민주·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군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도록 군 가치관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조은영 외, 2020: 5). 이에 따라 정신전력교육은 장병들에게 투철한 군인정신을 심어주고 정신무장을 강화하면서도 이들을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이 어려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구에 맞춰 각각 다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통합적 과제 수행을 통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실마리는 군인의 민주 의식과 정신무장상태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데에 있다. 군인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심어주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은 단순히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 의식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각자가 나라의 주인이

라는 의식을 지니고 용감하게 싸우는 까닭에 비민주적 국가의 군대보다 강한 무형전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정상근, 2018: 13-16).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핵심 개념은 ‘군복 입은 시민’이다. 이 개념은 약 20년 전부터 군에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군과 민주사회의 조화 또는 육군의 가치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을 통해 조명받고 있다(정상근, 2019: 5). 군복 입은 시민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독일군의 운영 방향인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를 참고하여 한국적으로 적용하고 내적 가치 교육의 확장을 통해 해당 개념의 내포적 의미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정상근, 2019; 조은영 외, 2020).

그런데 이 개념은 정신전력의 증강에 활용되기에 앞서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해당 개념이 군인과 시민¹⁾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복합 개념이며, 군인의 신분이지니는 두 가지 측면은 외견상 서로 합치하기보다 상

1) 익명의 한 심사자는 본고에서 사용되는 ‘시민’과 ‘국민’ 사이에 정확한 개념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리한 지적을 내놓았다. 만일 본고의 논의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이 핵심 논의로 차용되었다면 그러한 지적은 더없이 옳을 것이다. 통상 헤겔 철학에서 ‘bourgeois’의 역어인 ‘시민’은 사적 권리를 향유하고 개인의 욕망을 쫓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citoyen’의 역어인 ‘국민’은 개인의 이익 너머의 공적인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희생할 줄 아는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Hegel, 1986: 266 참조), 따라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에 대응하는 중요한 개념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포함하여 인용된 여러 문헌들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사회에서 국가로의 이행이 논의에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닌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하지는 않았다.

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계급체계에 따라 엄격한 상명하복을 그 원리로 삼는 군대의 작동방식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민주사회의 운영질서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헌팅턴 등의 학자는, 군대를 일종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의 정치적 질서에 의해 간섭될 수 없는 독자적 질서를 지닌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Huntington, 1957: 11-15).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군인은 두 개의 대립되는 질서에 속한 이중적인 존재이다. 실로 군인의 의무와 시민적 자유의 두 질서가 충돌하는 듯 보이는 사례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목격한다. 군 내부는 물론 외부에까지 알려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장병들이 자신의 신분을 구성하는 두 측면 사이에 긴장 관계를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징후라 할 것이다.²⁾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 놓여 있는 추론 과정을 추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군인은 군대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일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몇몇 장병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와 복무 적응에 악영향

2) 일례로 한 육군 장교가 SNS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신의 상급자를 비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지니는 함의를 자세히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준형(2014) 참조. 또 2008년 군법무관 여섯 명이 군 내의 불온서적 차단대책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은 이러한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미치고 있다.³⁾

본 연구는 ‘군복 입은 시민’ 개념에 대한 심화된 철학적 이해를 통해 해당 개념이 배태하는 두 요소 사이의 내적 긴장을 개념적으로 해소하고, 이 개념을 새로운 군 가치의 정립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활용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위해 본고에서는 현행 정신전력교육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이 교육되는 과정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통해 내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검토하고 그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 작업은, 해당 개념이 의미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가, 개인, 자유 등의 기본개념 역시 검토하고 재이해하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개념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해석은 헤겔이 『법철학』에서 제시했던 자유와 국가, 개인에 관한 통찰들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속 ‘군복 입은 시민’ 개념 그리고 ‘국가’, ‘개인’, ‘자유’라는 세 가지 연관 개념들을 논증적으로 분석한다(II). 다음으로 네 가지 개념의 의미를 헤겔 법철학의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그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낸 뒤(III), 그에 따라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재서술함으로써 해당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적 군 가치관 정립과 정신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IV).

3) “외적으로 동기화된 병사들 즉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군 생활에 있어 많은 심적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 저조한 만족을 경험했다.”(정태연 외, 2016: 464.)

II. 교육내용 속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검토

현행 정신전력교육에서 군인 신분과 시민 신분의 관계를 다루며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명시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은 제10과 「군대조직의 특성과 군대윤리」이다. 양자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에 성립하는 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 성립하는 연관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다루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신전력 교재의 내용을 논증적으로 재구성하여, 군복 입은 시민 개념과 그것이 내포하는 내적 긴장의 문제를 현 교육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군복 입은 시민: 시민의 권리와 군인의 의무

먼저, 현 교육과정은 군인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군인은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으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장받는다. 그래서 가령 군인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개인의 의지에 의해 종교와 사상적 신념을 지닐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여 다른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⁴⁾ 군인이 이러한 자유를 갖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4) 국방부, 2019,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195.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인이 속한 또 다른 사회체계인 군 조직은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질서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군은 국가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상명하복을 원리로 한 위계구조 및 계급질서를 갖는다(국방부, 2019: 197-198). 이에 따라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군인은 국가와 그 구성원들 전체의 사활이 걸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내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임무 완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국방부, 2019: 198). 군대는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태도로 일치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군의 사명을 달성해야 하는 한에서 군인의 의무에 관한 규율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우선하는바, 시민적 자유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제한된다. 예컨대 군인은 보안을 유지할 의무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⁵⁾ “개인적 서신교환이나 통신의 비밀은 보장되지만 군사관련 정보는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외활동에 있어서도 국방 및 군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국방부, 2019: 196) 또 군인은 전투를 위한 임무 수행을 치명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집단 불복종의 발생 가

5)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장 제28조, 제32조, 제33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는다.⁶⁾ “전투상황에서 집단적 명령 불복종 사태가 발생한다면, 승리는 고사하고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국방부, 2019: 196) 그 밖에도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군인은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해서는 안 되며, 군기 확립을 위해 영내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한편 기본권은 군사적 직무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상관의 명령 또한 그것이 정당한 한에서 복종 의무가 부과된다. “규정이나 훈령에 벗어난 명령일 경우 엄밀히 말해 복종할 필요가 없”(국방부, 2019: 209)으며, “직무상 명령이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불법 명령이라는 판단이” 드는 등 명령의 정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상관에게 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국방부, 2019: 210). 이는 군 조직의 질서가 기본권의 일부를 유예하는 만큼 군의 특수성 또한 인간 사회의 보편적 합리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뜻한다.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상명하복 정신 또한 필요하다. [……] 군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이 엄중한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한다. 맹목적 획일성보다 하위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살려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국방부, 2019: 215)

요컨대 현 정신전력교육과정의 설명에 따르면,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이 내포하고 있는 내재적 긴장은 시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장 제31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민적 권리와 군인의 의무 간의 상호 제한에 의해 완화되어 조화를 이룬다. “우리 병사들은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군대조직이 사회조직과 다른 점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질서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넘어설 수 없다.”(국방부, 2019: 215) 군인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를 보장받지만, 군사적 직무 수행의 의무가 기본권의 보장에 우선하는 까닭에,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한에서 시민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자유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교재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설명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장과 정확히 같은 관점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⁷⁾ 이 점에서 교재에서 택하고 있는 관점은 헌법의 입장을 채택하여 재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시민적 자유와 군인의 의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절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 논증만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가 구명되지 않는 한 양자는 서로에게 이종적(異種的)이고 낯선 것으로

7)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7조 제2항.

로 남는다. 서로 다른 두 요소를 조율하려는 시도는 대립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논증의 기본적인 요지는 드러났지만, 위 논증을 보다 설득력 있게 구성하려면 시민적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위중한 군인의 의무가 최종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가 보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국가관 :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국가에 대한 의무의 정확한 성립 근거에 관해 현 교육과정의 명확하게 논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네 가지 정도의 견해를 소개한 후, 이들 중 하나의 견해만으로 국민의 의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국방부, 2019: 20-21). 그러나 실제로 국가관을 다루는 제1부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소중함을 논증함으로써 이러한 정당화 작업이 간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중요성이야말로 국가방위라는 군인의 사명이 성립하는 궁극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군인의 의무가 지니는 궁극적 배경에 관한 논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1부 「국가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에 대해 현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 국가의 1차적 기능은 대외적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국방의 기능이다. [……] 국가의 2차적 기능으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복지사업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국방부, 2019: 14) 국가는 일차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나아가서는 공공사업과 사회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한다.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일 뿐만 아니라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 없는 개인이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예증된다. 현 교육과정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억압받고 수탈당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이로부터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국방부, 2019: 19)을 도출한다. 정리하자면 국가는 개인이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 나름의 삶을 꾸려가기 위한 장치이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는 이보다 나아간 단계의 또 다른 논증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실제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국방부, 2019: 25)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 아래 자유·평등·인권의 보장, 복지라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체제”(국방부, 2019: 54-55, 인용자 강조)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도덕적 원리를⁸⁾ 인권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민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국방부, 2019: 55-57),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외적 강제에 처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펼치도록 해준다(국방부, 2019: 57-58). 또 만인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국방부, 2019: 59-60)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국방부, 2019: 60-62).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자유, 평등, 인권은 특정 시공을 초월하여 유효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은 이 보편적 가치들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목숨 바쳐 지킬 만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논증의 요지이다.

의무와 자유의 상호 제한이라는 1절의 논제를 본 절에서 제시된 국가관과 종합하면 1절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의 일부는 해결된다. 군인의 의무가 시민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소중한 이유는 이 나라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사상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안녕에 힘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정치이념의 훌륭한 본(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개인이 안전을 보장받

8) 특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는 “당신의 인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모두의 인격에 관해서도, 인간을 결코 한낱 수단뿐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IV:429)는 칸트 도덕철학의 자기목적정식(Selbstzweckformel)을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칸트의 저술은 베를린 학술원판(AA)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여 인용하였다.

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조건을 마련해주는 일이며, 자유·평등·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국가 구성원들의 시민적 자유를 지키는 일을 포함한다. 이리하여 당초에 시민적 자유와 대립되는 요소로 정립되었던 군인의 의무는 이제 더 이상 시민적 자유에 이질적인 요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써 군인의 의무가 시민적 자유에 우선권을 갖는 이유는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군복 입은 시민의 이중적 지위가 내포하고 있는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채 남는다. 군인의 의무와 시민적 자유의 충돌은 이제 그 형태를 바꾸어 **자유**의 증진을 위한 **자유**의 포기라는 역설로 나타난다. 이 역설은 장병들의 사고 속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불러일으킨다. 국가방위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적어도 일부는)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의무를 피하기를 택하든 받아들여기를 택하든 우리는 자유의 포기 상태에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혹 군인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나마 덜 부자유한 상태에 들어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은 아닌가? 군복 입은 시민 개념 내 난제이자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병들의 복무 적응을 저해하는 정신전력상의 취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으로부터는 이러한 사고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적할 만한 응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

는 역설은 자유의 개념을 다시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국방부, 2019: 57). 그러나 이 자유 개념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서술된 자유 개념은 단순히 타인이나 국가에 의한 억압이나 강제가 부재하는 상태를 뜻할 따름인바, 이는 별린(I. Berlin)이 정의한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의 규정에 정확히 일치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도 나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보통 자유롭다고 말해진다. 정치적 자유란 이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행위하는 영역이다.”(Berlin, 2002: 169) 이러한 소극적 자유 개념은 인간이 자유롭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데,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극적 자유가 그 자체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내용에도 기술되어 있듯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복지와 사회정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여 개인이 고차원의 목표를 추구하고 바람직하며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조력하는 일을 자신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에게 그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개입도 없이 단지 소극적 자유만이 보장될 뿐이라면, 그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는 힘들다.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상호 의존적이며, 어떤 사람의 활동도 다른 이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적이지는 않다. [……] 어떤 사람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의존해야 한다.”(Berlin, 2002: 171) 개인이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지 않고 국가가 단순히 치안 유지만을 담당하는 야경국가로 남지 않는 이상, 현대 사회 속에서 단순히 소극적 자유만을 견지하는 관점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적합하다. 요컨대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유 개념과는 다른 자유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III.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법철학적 해석

앞 장에서 군인의 의무와 시민적 자유 사이에 외면적으로 해소되기 힘든 모순이 내재하며, 이 문제는 자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법철학에 나타난 헤겔의 통찰을 이용하여 자유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로부터 국민과 국가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해를 거쳐 마침내는 군복 입은 시민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도달할 것이다.

1. 공허한 무규정성과 인륜적 자유

자유는 헤겔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이자 거대 개념인바, 헤겔 철학 전체에서 자유가 지니는 의미를 모

두 추적하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본고에서 설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헤겔적 자유 개념의 기본 구도를 논술한 후 이것이 소극적 자유가 맞닥뜨리는 난점을 어떻게 문제화하고 해결하는지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헤겔 법철학에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계기를 지닌다. 첫째로 “의지는 α) 순수 무규정성 혹은 자아의 자기 내로의 순수 반성이라는 요소를 지닌[다.]”⁹⁾ 이 무규정성이란 나를 특정한 형태로 고착시키고 제한하는 일체의 내적·외적 규정들을 도외시할 수 있는 능력(GPR, § 5, Anm.)이다. 나를 제약하는 여하한 구속으로부터 자기를 해방하여 안팎으로 내가 아닌 타자를 물리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힘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자유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거부하기만 할 뿐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결여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하게 무규정적인 의지는 어떤 특정한 대상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의욕할 수 없으며, 어떤 특정한 개체로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될 수 없는 텅 빈 자아일 뿐이다. “의지가 의지일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은 도대체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GPR, § 6, Zus.) 따라서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 나는 동시에 나를 제약하는 규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 β) 이런 가운데 자아는 구별 없는 무규정성으로부터 구별, 규정함 내지 어떤

9) Hegel, G. W. F., 임석진 역, 2008, 『법철학』, 한길사, §5. 번역 수정, 원저자 강조. 이하 GPR로 약하여 절(§) 번호와 함께 표기하여 인용한다. 해당 절의 주석의 경우 ‘Anm.’, 보론의 경우 ‘Zus.’로 표기하여 인용한다.

내용과 대상인 규정성을 정립함으로 이행한다.”(GPR, § 6, 번역 수정) 자유의 두 번째 측면은 자기에 대한 이런저런 규정들을 받아들여 자기를 한정하는 것이다. 타자와 나를 구별하는 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는 특수한 개인이 될 수 있으며,¹⁰⁾ 규정을 통해 나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대상을 의욕할 수 있다. 한편 둘째 계기만으로도 자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모든 규정과 제약을 그저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순응이나 복종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얼핏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가지 계기의 통일이다. “ γ) 의지는 이 두 가지 계기들의 통일—자기 내로 반성되어 이로써 보편성으로 되돌아간 특수성—인 개별성이다. 그것은 제한된 것으로 정립되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즉 자기와의 동일성과 보편성 속에 머무르는 자기규정이다.”(GPR, § 7) 자유의지란 특정한 규정들에 멈춰서지 않고 자기의 현존과 현 상태를 부정할 수 있으면서도, 모든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규정·제약하여 스스로 구체적인 현존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에게 규정을 부여하고 이를 부정하고 갱신해 나가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음, 이것이 자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에게 자유란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머무름’(Bei-sich-selbst-sein im Anderen)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Vieweg, 2019: 61). 자유는 자기규정(Selbstbestimmung)과

10) 이 점에서 자유의 둘째 계기는 이미 다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축하며, 자유가 상호주관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Vieweg(2019: 85-86) 참조.

동의어이다(Vieweg, 2019: 77).

현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는 위의 세 가지 계기 중 첫 번째에 상응하며, 첫 번째 계기가 맞닥뜨리는 모순에 그대로 직면한다. 그것은 분명히 자유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의 한낱 일면에 지나지 않으며,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 규정성의 결여일 뿐이다. 자기에 대한 일체의 규정을 거부하고 타자를 도외시한 채 진공 상태로 도피하는 개인은 자유인으로 성립할 수조차 없으며, 현실에서는 기껏해야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를 일삼는 광란”(GPR, § 5, Anm.)으로 나타날 뿐이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배척하고자 하는 부정적 자유의 좌절은 거꾸로 개인이 자기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함으로써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가리켜 보인다.

자기규정은 자유의 본질을 이루는 핵이며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 개념만으로 현실 속 구체적인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자기규정으로서의 자유가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도덕성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덕성」 장에서 등장하는 도덕적 의지는 “의지의 순수 무제약적 자기규정”(GPR, § 135, Anm.)으로서, 자유의 자기규정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주체의 특징은 행위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의도(Absicht)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의 외적 현존은 개별성들로 무한히 나뉘어 고찰될 수 있는 잡다의 연관이며, 행위는 그러한 개별성 중 하나에만 맞닿아 있는 것으로만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자**의 진리는 **보편자**이며, 행위의 규정성은 독자적으로 외적인 개별성으로 고립된 내용이 아니라 잡다한 연관을 자기 내에 담지하는 **보편적** 내용이다.”(GPR, § 119, 원저자 강조) 사람은 몸을 움직여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현실에 여러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결과는 우연적이고 의지 외적인 요인들과 뒤섞여 있다. 예컨대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떠는 일, 라이터를 집어 장작에 갖다 대는 일은 저마다가 하나의 개별적인 동작(Tat)이다. 그리고 장작에 불이 붙어 열기가 나의 몸을 데우는 일은 동작이 야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련의 동작과 결과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연쇄가 의지의 자유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추위에 몸을 떠는 일은 의지에 의한 일이 아닌 추위라는 외부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에 불과하며, 라이터를 집어 장작에 갖다 대는 일은 행위자의 자유에 의한 의지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후자 역시 신경계의 신호와 근육의 움직임에 따른 생물학적 인과관계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양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별점이란 바로 ‘열원을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행위자의 목적이다. 따라서 잡다한 동작과 결과의 연쇄들을 통일하여 하나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의도이다. 이처럼 단순한 우연성이나 자연적 충동에 파묻혀 있는 상태를 벗어나 목적에 근거해 행위(Handlung)를 할 수 있다는 점, 즉 하나의 동작을 행위로 규정할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주체는 자유

롭다. “주관적 의지는, 이 규정들이 내면적으로 의지 자신의 것으로 정립되고 의지에 의해 의욕되는 한에서 도덕적으로 자유롭다.”¹¹⁾

도덕적 주체는 매 순간 이런저런 목적을 설정하지만, 개별 목적의 위에는 보다 높은 층위의 목적이 있고, 개별 목적은 상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GPR, § 122). 예컨대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앞서의 목적은 몸의 적정온도를 유지해 생명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상위 목적의 수단이다. 이런 목적-수단 연쇄의 끝에는 개인의 안녕(복지; Wohl)과 행복(Glückseligkeit)이, 나아가서는 주관적 만족을 넘어서 객관적인 공동의 선(좋은; das Gute)이 있다.¹²⁾ 도덕적 주체의 최종 목적(Endzweck)은 바로 이 선이며(GPR, § 129; Enz., § 507), 주체는 최종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즉 선한 행위를 하기를 의욕한다. 이때 도덕적 의지의 행위 법칙은 주체에게 도덕적 의무(Pflicht)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덕적 자유는 아직도 추상적인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수립한 행위 법칙이 선한 행위인지 아닌지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도덕적 주체성이라는 주관적인 측면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

11) Georg W. F. Hegel, 1986b,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Dritter Teil. Die Philosoph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and 10, hrsg.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 Suhrkamp: Frankfurt am Main, §503. 이하 Enz.로 약하여 절 번호와 함께 표기한다.

12) 선은 각 개인의 안녕과 떨어져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안녕을 그 안에 내포하는 가치이다. 자세한 논의는 GPR, §130 참조.

인륜의 개념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순전히 도덕적 관점을 고집하는 일은 그만큼 이 성취[의지의 무제약적 자기규정]를 **공허한 형식주의**로, 도덕의 학을 **의무를 위한 의무**라는 언설로 격하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어떤 내재적인 의무론도 가능하지 않다. **밖으로부터** 질료를 들여오으로써 **특수한** 의무에 다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모순의 결여**로서의, [즉] **추상적 무규정성**의 확정에 다름 아닌 **형식적 자기 일치**라는 저러한 의무의 규정으로부터는 특수한 의무의 규정으로 이행할 수 없거니와, 행위의 그러한 특수한 내용이 고찰된다고 해도 행위가 의무이냐 아니냐 하는 저 원리 내에는 기준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GPR, § 135, Anm., 번역 수정, 원저자 강조)

헤겔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행위란 주체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체를 둘러싼 구체적인 맥락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이 구체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어떤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행위자의 환경을 구성하는 저 ‘구체적 맥락’의 구성요소는 개인이 처한 시대, 문화, 습속, 제도, 국가, 사회규범 등이며, 이것이 바로 헤겔이 인륜(Sittlichkeit)이라 부르는 계기이다. “우리는 특정한 행위를 내용적으로 특정한 맥락에 의존하여—예컨대 어떤 국가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즉 어떤 인륜적 환경에서 그 행위가 수행되는지—좋은 것으로 혹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Vieweg, 2019: 286-287)

왜 인륜적 환경이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나치 치하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에 갇힌 야콥은 모든 의욕을 잃은 채 수용소로 압

송될 날만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조만간 연합군이 바르샤바로 진군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다. 게슈타포는 야콥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위협하지만, 야콥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총살당한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 덕분에 유대인 동료들은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고, 결국 수용소로 이송되던 중 연합군에 의해 구조되었다. 여기서 불의한 정권에 점령당한 폴란드, 가혹한 유대인 탄압, 당시 게토의 절망적인 분위기 등의 요소를 모두 사상해버린 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 법칙만을 고수한다면 야콥의 행위는 악하다는 반직관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야콥의 행위가 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고려할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은 분명 선한 행위이다. 그러나 야콥이 저 상황에서조차 마냥 정직하게만 처신하는 것은 정녕 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선한’ 행위준칙을 고집하는 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가? 선을 목적으로 삼는 주관적 도덕성이 맞닥뜨리는 이러한 모순은, 개인이 단순히 주관적 측면에만 근거하여 행위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의 배경에 준거할 때 비로소 야콥의 행위는 온당하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야콥은 엄격한 도덕적 의미에서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살인정권 혹은 테러정권에서—여기서는 이미 모든 법(/권리)이 전도되어 있다—그런 저항은 정당성을 가지며, 도덕적 정당방위로, 단지 무법과 비도덕성에 반응하는 제2의

행위 내지 폭력으로 간주한다.”(Vieweg, 2019: 287) 이처럼 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배경 속에 존재할 때라야 비로소 나의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배경이란 제도적·문화적 상황, 즉 인륜적 조건이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며, 이 사회적 관계들의 고유한 규범성 속에는 벌써 의무들과 권리들—즉, 간단히 말해 도덕적 규칙들—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는 도덕적 관점의 자립화가 빚어낸 끔찍한 공허함에서 해방된다.”(Honneth, 2017: 67)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처럼 말할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인 주체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저 공허한 형식일 뿐이다. 개인은 인륜의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인륜이란 살아 있는 선으로서의 자유의 이념이다. [……] 인륜이란 현전하는 세계이자 자기의식의 본성이 된 자유의 개념이다.”(GPR, § 142, 번역 수정, 원저자 강조)

2. 현실화된 자유로서의 국가와 국방의 의무

인륜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다. 앞서 우리는 자유를 자기규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준거들은 인륜적 공동체 속에서야 마련될 수 있다. 예컨대 두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이고, 매주 성당에 다니는 가톨릭 신자이며, IT회사의

직원이고, 바이에른에 거주하는 독일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에게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비로소 개인을 구체적인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만드는데, 이 규정들은 가족, 종교 공동체, 회사, 그리고 국가라는 인륜적 공동체들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개인의 출생과 함께 부여된 것들도 있지만) 자신의 주관적 선택에 의해 얻어지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기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이 자신을 규정해나갈 수 있다. (예컨대 그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정유회사로 이직하거나, 개신교로 개종할 수 있다.) 개별적인 개인은 이처럼 인륜적 공동체라는 보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 정체성의 형성은 반드시 사회화를 수반한다.** 인륜적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개인은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고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는 부자유나 강제가 아니라 추상적 도덕성이라는 진공상태로부터의 해방이다. “개인은 오히려 의무를 걸머지는 데서 해방을 누린다. 여기서 해방은 [……] 현실생활이나 행위의 객관적 지침에는 와닿지 못한 채 내면의 비현실성에 갇혀 있는 무규정적인 주관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의무를 걸머지는 데서 개인은 실제적인 자유로 해방되는 것이다.”(GPR, § 149) 의무는 개인이 순수 내면에만 근거한 도덕적 자기확신을 고집할 때에만 제한으로 나타나는데(GPR, § 149), 앞서 보았듯 객관적 조건들을 도외시키는 주관적 확신은 아무 구체적인 행위 법칙도 정립할 수 없는 공허한 형식성에 불과하다.

국가는 여러 인륜성 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최상의 보편적

규정¹³⁾이며, 다른 인륜적 규정들의 성립 조건을 이루는 근본 규정이다. 결혼, 가족, 시민사회적 시장과 직능단체(Korporation) 등은 국가 없이도 존립할 수 있는 규정들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현존하며 국가 내에서 구별되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 정체성과 자유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실체이다. “이 실체적 통일[국가]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인 바, 이 목적 속에서 자유는 최상의 법[권리]에 이르며, 이 최종목적은 개인들에 대해 최상의 법[권리]을 지닌다. 이 개인들의 **최상의 의무**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GPR, § 258, 번역 수정, 원저자 강조)

앞서 제시된 안녕(복지; Wohl), 행복, 정의, 선 등 자유가 지향하는 목적들은 국가의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선”이기도 하다. 국가의 번영 속에서 국민은 최고의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예술, 학문이다. “국가 속에서 자기의식은 현실에 뿌리박힌 실체적인 지와 의욕을 유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종교에서는 정신의 진리에 대한 감정과 표상이 이념의 본질에 맞추어 표현되고 학문에서는 정신의 진리가 국가·자연·이념의 세 영역에 걸쳐 상보적인 관계에서 동일한 진리를 나타내는 가운데 자유로우면서도 개념적으로 인식된다.”(GPR, § 360) 이러한 지적·문화적 결실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13) 동맹이나 국제연합 같은 기구를 국가의 상위 규정으로 보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기구들은 개별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쉽사리 변동하고 파기되며,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바 “언제나 상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GPR, §259, Zus.)

자기규정으로서 지고의 자유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최고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객관적 터전 속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은 세계 속에 있는 신의 통로이다”(GPR, § 258, Zus., 번역 수정).¹⁴⁾

국가는 수많은 개인의 의지를 통일하여 높은 단계로 고양하는 보편자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독립하여 존속하는 개별자이다. 하나의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배타적 독자성 속에서 존립한다. 따라서 내가 속한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은 곧 타국에 흡수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개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배타적인 독자존재인 개체성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때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타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적 정신의 독자존재는 국가의 독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국가의 독립이야말로 국민의 제일가는 자유이며 최고의 명예이다.”(GPR, § 322) 하나의 국가는 그 나라 국민 모두의 자유의지가 녹아 있는 실체인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일은 국민 모두의 자유를 그 고유한 독자적인 형태로 지켜내는 일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상기한다면, 이제 국가적 위협에 맞선 전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백하다. 그것은 한낱 집단 간의 싸움이 아니라

14) 이 진술은 헤겔의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로 이해되고는 했다. 그러나 헤겔 철학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서 이해하자면 이는 국가를 불가침하게 신성화하는 명제가 아니라, 국가가 절대정신의 자기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임을 뜻한다. 정대성, 2015,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넘어서: 헤겔 국가철학에 내재한 ‘사회적 국가’의 이념”, 『철학연구』 제108집, 25 참조.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 물론 전쟁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에 내몰지만,¹⁵⁾ 이 희생은 절박한 타당성을 지닌 채 등장한다.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게 나라를 내준다면 국민 개인은 생명을 부지하는 대신 자신과 자신의 자유 전부를 잃는 까닭이다. “여기서 국민의 자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생명이 끊기고 만 것이다”(GPR, § 324, Anm.).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모든 규정과 규정 능력(즉 자유)이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소멸한다는 뜻이다. 단언하자면 국가를 포기한 개인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은 채 한갓 생물학적 개체로 살아갈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방위란 나를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인격이자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국가 내부의 기능에 따라 직업이 각기 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방위라는 국가 기능에 따라 군대가 출현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국가의 무력이 상비군이 되고 국방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위한 사명이 하나의 계층으로 화한다는 필연성은 이와는 다른 갖가지 특수한 요소나 이해나 업무가 결혼을 성사시킨다거나 또는 상공인이나 정치가나 사업가 등등의 계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필연성과 궤를 같이

15) 사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애초에 국가의 독립을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지켜냄으로써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나머지 국가를 단지 시민사회 정도로 간주하고 국가의 궁극목적이 단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아주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국가의 독립성]이 희생되어야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GPR, §324, Anm.)

한다.”(GPR, § 326, Anm.) 따라서 상비군의 창설과 군인 신분
의 존재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해득실 등을 따져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GPR, § 326, Anm.), 군대는 폐가 동물의 호흡
을 담당하듯이 국가라는 유기체의 자기보호를 담당하는 한
기관(Organ)이다.

군인은 용기의 계층으로서(GPR, § 325) 용기라는 덕목의
참다운 형태를 보여주는데, 용기의 참다운 형태란 국가를 지
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무릅쓰는 태도이다. “동물이나 도
적이 보이는 대담성도 있고 명예를 위한 용기나 기사다움의
용기도 있지만 이는 아직 용기의 진정한 형식이 아니다. 개
화한 국민의 참다운 용기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GPR, § 327, Zus.) 참다운 용기는 이른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자유를 영위
하려는 의지로부터 발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군복
입은 시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해보자. 첫째,
자유는 한낱 간섭이나 강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 능력, 즉 지속
적인 자기 형성 능력이다. 둘째, 자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
을 요구한다. 국가는 단순히 개인과 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양자는 기존에 이해되던 것보다 훨씬
유기적인 관계에 들어서 있다.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그의
자유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준거이며, 개인은 국가를 유지하
고 국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부분을 이룬다.

셋째, 개인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속에서 **군복 입은 시민** 역시 새로이 이해되는데, 이는 국방의 의무가 인륜적 의무의 하나로서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의 실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고립된 개인의 공허한 무규정성이나 적국의 지배에 의한 자유의 상실로부터 해방을 꾀하는 일이며, 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모두의 자유가 실현될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군인 계층은 국가가 지니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하나이므로, 다른 직업계층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자유의 한 형태이자 자유의 실현 방식이라고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때 군복 입은 시민 개념에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이중적 지위가 해소되었음에 주목하자. 군인은 시민적 자유와 대립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신분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규정이자 시민적 자유의 구체화된 형태이다.

IV. 인륜적 관점에 기반한 정신전력의 증강

1.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이제 제1과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의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II장의 2절에서 교재로부터 대한민국의 중요성에 대한 두 가지 논증을 읽어냈다. 두 논증은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다 풍부한 개념적 자원을 활용해 이 논증을 훨씬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논증은, 국가가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가 국가가 단순히 구성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구성원의 **삶 자체**를 부여하는 실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개인은 국가와 그 내부의 여러 인륜적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무엇이 될지 자유롭게 선택한다. 사람은 가족, 학교, 회사, 종교단체 등 국가가 마련해주는 각종 사회기구들 안에서 의사가 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될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누구와 결혼하고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선택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고립된 개인은 생명과 재산을 지닌다고 해도 아무런 자유로운 선택지도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단순히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국방부, 2019: 15) 하는 장치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국가의 의미를 이렇게 서술할 때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례가 가지는 효과는 극대화된다. 일제강점기는 단순히 자유와 평등, 존엄을 빼앗기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경험(국방부, 2019: 19)에서 나아가 훨씬 충격적이고 처참한 경험으로 등장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에 종속되었던 경험은, 나를 나로 성립시키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타인의 강제에 의해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규정당하는 경험이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당하고 억지로 일본어를 익히며, 창씨개명을 당하고, 강제로 일왕에 충성하며 황국신민이 되기를 강요받는 경험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자유가 인간을 비로소

다른 자연적 존재와 구별하는 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빼앗기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잃은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일제에 저항해 온 의병과 독립군의 활동 또한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활동에서 나아가, 외세가 강요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 즉 타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으로 생각될 수 있다.

두 번째 논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라는 점이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정의하고 이를 대한민국 헌법과 연관시킨 후 기본권의 종류와 복지이념 등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으며(국방부, 2019: 55-63), 그 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와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다(국방부, 2019: 63-66).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신념화를 겨냥하는 이 교육내용의 서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 장의 논의로부터 얻은 통찰을 가지고 논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유, 평등, 존엄을 열거하여 설명하는 서술에서 나아가 재해석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보편 가치들과 개인, 국가가 갖는 관계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는 단순한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각 개인을 그 자신으로 만드는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란 인류의 수많은 보편적 가치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평등과 존엄은 모두 자유로부터 따라올 수 있는 개념들이다.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교재에서도

지적되었듯 “자유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며(국방부, 2019: 59),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물건처럼 수단으로만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욕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점을 존중한다는 것이다.¹⁶⁾ 이렇게 서술될 때 평등과 존엄은 단순히 고귀한 가치라는 의의를 넘어 인간 자체의 본질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규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복지이념과 사회정의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국민의 편익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善)과 안녕(복지)의 현실적인 형태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이념들을 상위 개념인 자유와의 유기적 연관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해석은 장병들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을 인간 자유의 목적이라는 상위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계열화함으로써 이해·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논증을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상기의 교육내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역시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강하게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존엄, 복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니는 우월성은 기존의 서술에서보다 강한 함축을 지닌 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도출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과 같

16) 『기본교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개념규정을 칸트의 도덕철학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칸트를 원용하여 존엄 개념의 규정을 보강해보자. “인격으로서, 즉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고려된 인간만이 모든 가치(Preis) 너머로 고양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예지적 인간[homo noumenon]으로서 [……] 목적 그 자체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VI:434, 인용자 강조)

은 경직된 전체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는 그것이 자유라는 인간의 본질을 훨씬 훌륭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본질이자 존재 의의란 자유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특정한 정치이념의 모범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모범적 본이다. 이 논점은 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이념적 우월성, 보편적 가치 구현, 윤리적 우월성, 자기반성 등의 네 가지 항목(국방부, 2019: 63-66)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핵심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네 가지 특성은 모두 자유라는 인간의 정신적 본질에 관여하는 특성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체제와의 대조적 서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훨씬 증대된다. 북한이나 소련 등의 공산주의 체제가 인간의 사상과 행위의 자유를 박탈하고 당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국방부, 2019: 64)은 이들 국가가 단순히 보편적 가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실패했다는 점, 국가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단순히 체제 경쟁의 승리와 패배자가 아니다. 양자는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척도로 하여 우열 관계에 놓인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성공적인 사례인 반면 북한은 국가로서 그 의미를 상실한 실패작이다.

2. 권리와 의무: 자유의 두 얼굴

제1과 국가관의 여러 장에 대한 재서술은 그 자체로 해당

부분의 논증적 설득력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제10과의 「군복 입은 민주시민」 장에 나타난 군인과 시민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게 한다. 현 교육과정은 군인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군인의 의무로부터 말미암은 권리의 제한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로 놓아둔 후 이를 상호 제한을 통해 조화시키려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취하는 입장을 설명한 것에 가깝다. 물론 이들 법의 정신에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펼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서 나아가 양자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해소의 실마리는 다음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병역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국방부, 2019: 172)

현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구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고, 권리와 의무가 거래처럼 교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뿐이다(국방부, 2019: 172-173). 그러나 병역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진술은 개인의 사회적 자유에 관한 훨씬 깊은 함축을 지니고 있다.

일단 앞 장에서 살펴봤듯 의무와 권리는 모두 인륜적 공동체의 규범들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규정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의무와 권리가 그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규정의 표현상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무는 “~해야 한다”

라는 당위의 형식을 띠며, 권리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는 가능 내지 허용의 형식을 띤다. 양자의 규정적 형태상의 차이는 어떤 때에 실질적인 차이로 간주되는가? 두 가지 종류의 규범 간의 구별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개인의 특수한 욕망들이 인륜적 규범들과 충돌할 때이다. 즉 규범에 위반되는 것을 의욕할 때에 의무는 권리와 상충하는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의무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 의무로부터 유리된 개인의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적 욕구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의무를 저버릴 경우 그의 행위는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나온 자기모순에 가깝다. 요컨대 의무가 권리와 다른 자유의 대립물처럼 생각되는 경우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추상적으로 생각될 때뿐이다.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무규정적인 주관성이나 추상적 자유에 대립하는 경우 그리고 자연적인 의지의 충동이나 규정되지 않은 선을 자의적으로 규정해버리는 도덕 의지의 충동과 대립하는 경우에 한한다.”(GPR, § 149)

반면 특수한 의지가 규범과 합치하는 경우 양자의 차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인륜적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그른 것을 싫어할 때, 그에게 부과된 의무는 권리와 다르게 자유와 대립하는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명시적

으로 나타내는 규범이다. “인륜적 실체와 그의 법칙이나 권력은 주관에 이질적인 낯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관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룬다는 정신의 증언을 손에 넣[는다.]”(GPR, § 147) 요컨대 개인이 구체적 공동체 속의 자유인으로 존재할 때 권리와 의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의 의무는 지성적·인격적으로 자신을 갈고닦아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권리이며, 근로의 의무는 직업을 지님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권리이다. 국방의 의무 역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아테네 시민들이 스스로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들의 의무는 중대한 위협과 싸워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낼 권리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렇게 본다면, 권리와 의무는 자유라는 동일한 실체가 현실 속에서 드러난 두 가지 외면적 형태, 즉 자유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와 권리는 동일성으로, 자유의 현존으로 사유할 수 있다.”(Vieweg, 2019: 356)

시민적 권리의 제한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른 의무의 부여는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형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의 의무는 자신에게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기규정하는 개인의 의지를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한 규범들이다. 군기를 엄정히 할 의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등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17) 널리 지적되듯 이 의무이자 권리는 아테네에서 오로지 자유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권홍우, 2018: 29-30). 피베크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노예나 몸종은 그 어떤 의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권리(법)가 타자에게 있기 때문이다.”(Vieweg, 2019: 356)

강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자유의지로부터 부여되는 행위 양식이다. 이는 다른 직업을 지닌 시민의 자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기업인에게는 다른 시민들과 달리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횡령이나 사기, 뇌물공여를 범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기업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모순되는 행위일 따름이다.

이상의 논의를 모두 마치고 다시 자문해보자. 군인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나마 덜 부자유한 상태에 들어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인가? 장병들이 이러한 의문과 더불어 불안과 의혹에 빠지는 일은, 나의 자유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한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국가가 ‘적대적 대립자’[개인의 목적과 보편적 법 사이의 대립]의 합리적 조정자로서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하는 작업은 [……] 엄청난 양의 불행으로 표현되는 자유의지 개념의 불충분한 규정으로부터 생겨[난다.]”(Vieweg, 2019: 259) 이제 새로이 이해된 ‘군복 입은 시민’ 개념 속에서 ‘군인’과 ‘시민’은 상충하거나 불일치하는 규정이 아니며, ‘군인’은 ‘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하나일 따름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최근 정신전력교육에서 대두된 두 가지 변화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부각하였고, 이 개념이 내적으로 떠안고 있는 선결 과제를 제시한 후 이를 철학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에 심화된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은 군인이자 시민인 장병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치관 상의 갈등이자 ‘정신전력적 취약점’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무장의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신념체계를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인은 시민과 이질적이거나 상충하는 신분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의 구체적 형태이며, 국가수호의 과업은 개개인의 삶과 훨씬 밀접하게 얽혀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새로운 해석은 구체적으로 개진해 보일 수 있다.

몇 가지 간략한 제언을 덧붙임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군복 입은 민주 시민 개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해당 개념에 대한 고려가 군 가치체계 차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도 논술했듯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병들에게 군인으로서 싸워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고 신념화시킴으로써 무형전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기 위함이다.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함유한 군 가치체계의 정립은 이미 제안된 바 있듯 군인정신의 교육을 보편적 정신 위에 위치시켜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다(정상근, 2018: 22-23;

조은영 외, 2020: 27).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입장에서부터 판단한다면, 군 내적가치 체계를 이처럼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할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신의 한 형태로서 군인정신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을 도모할 방향을 제공한다.

둘째, 군복 입은 시민 개념 및 자유민주주의적 신념화가 장병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조명받고 연구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군이 이룩한 유형전력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무형전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박정곤, 박영택, 2018: 105-106). 무형전력의 효과는 장병 개개인의 의식에서 발휘된다.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는 이기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장병들을 설득하는 것이며(정태연, 2021: 20), 심리적 측면에서 이 설득의 목표는 장병들의 동기부여(motivation)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군복 입은 시민이 정신전력교육의 핵심적인 가치개념으로 정착된다면 이것이 새로운 설득 방식이자 동기부여의 방식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며 얼마나 영향을 발휘하는지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연구는 적절한 정신전력교육이 장병들의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박일, 고영건, 2012: 118). 정신전력교육이 개인의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한다면, 정신전력교육은 설득을 통한 교육적 동기부여의 방법을 넘어 현역 장병들의 복무 적응을 돕고 군생활 전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은 논리적·비판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해당 문제가 개인 및 공동체의 윤리적(sittlich) 규범에 관한 물음이며, 이 주제는 사고 능력의 훈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이 군생활 중 맞닥뜨릴 규범적·윤리적 가치에 관한 물음은 초두에 논구했듯 의무와 권리의 충돌 같은 역설 또는 딜레마의 형태로 나타나기 쉬우며, 그것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줌으로써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 선생이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다른 모두는 순전한 청중에 불과한”(VI:478) 강의식 교수법과 다른, “학생의 사고의 진행을 이끌어 주는”(VI:478) 교육법이 필요한 것이다.¹⁸⁾ 이 점에서 육군에서 발간한 내적가치 함양 교재¹⁹⁾나, 신병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전해님과 정한겸(2019)의 연구, 이현석(2021)의 연구는 해당 주제에 적합한 교수법으로서 주목할 만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교수방식들은 장병들이 군생활 중 맞닥뜨릴 수 있는 물음이나 딜레마 상황을 핵심 논제로 설정한 후 그에 대한 토의를 통해

18) “선생이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은 단지 듣기만 하는 강술식 교수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그 지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들 스스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안내’해 주지는 못한다.”(홍우람, 2020: 59) 경험적으로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듯, 참여자의 토의를 통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주제를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측면에서 현저히 효과적이다(박일수, 2012).

19) 육군본부, 2018, 『내적가치 함양! 위국헌신의 참다운 육군』, 육군본부.

다양한 의견 발표를 유도하고 물음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의견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일회적인 사후강평의 단계에 머무르는바, 논리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능력의 훈련을 위해 학습자에 대한 연속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속적 피드백을 위한 방법론은 이를테면 문답법(Katechismus)의 모델로부터 착안할 수 있다. 예컨대 칸트가 제시한 사례를 보자.

3. 선생: 만일 네가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손에 넣는다면, 그 행복 전부를 혼자 가지고 있을 거니, 아니면 네 옆 사람과 나눌 거니? — 학생: 행복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만들 거예요.
4. 선생: 그 말은 네가 좋은 마음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구나. 하지만 네가 마음씨와 더불어 좋은 지성도 가졌는지 보자구나. 너는 기꺼이 게으름뱅이가 편안히 무위도식하며 삶을 보내도록 그에게 쿠션을 내어줄 [……] 거니? — 학생: 아뇨, 그렇지 않아요.
5. 그렇다면 너는, 네가 모든 행복을 손에 넣고 최고로 선한 의지를 지니더라도, 손을 내미는 모두에게 숙고 없이 행복을 쥐버리기보다는 먼저 각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에 얼마나 걸맞은지를 고려해 보겠구나.(VI:480-481)

위의 문답에서 선생은 학생의 조력자로서 학생에게 물음을 던진 후 학습자가 내놓은 답변을 보다 명료한 형태로 재서술해주고, 답변의 긍정적인 측면을 환기시켜주는 동시에 답변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명시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되돌아보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

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올바른 추론을 통해 답에 도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²⁰⁾ 이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배양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상응하여 장병들을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양성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인륜적 제도의 원천이 다름 아닌 의사소통 행위에서 관찰되는 토의적 합리성(Diskursrationalität)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Habermas, 2006: 236).

20) 군복 입은 시민의 양성에 걸맞은 구체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이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연구로서는, 이를테면 하브루타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도입함으로써 토의·토론 과정을 구체화하려는 서정목(2017)의 논문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박정곤, 박영택, 2018,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한국군 정신전력 혁신방향”, 『한국군사학연구』, 제74집 제1권.
- 박일, 고영건, 2012,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5권 제1호.
- 박일수, 2012, “토의·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5권 제3호.
- 서정목, 2017, “포스트 플립러닝에 있어서의 토의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한 하브루타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0호.
- 안준형, 2014, “SNS 공간에서의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 이현석, 2021, “학습자 중심의 군 정신전력교육 적용방안 연구—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64호.
- 전해님, 정한겸, 2019, “신병정신전력교육 방안 연구—질문과 토의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57호.
- 정상근, 2019, “독일 연방군 ‘내적지휘’ 철학의 한국적 적용—한국군의 ‘내적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제58호.
- 정태연 외, 2016, “군조직과 군복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군사연구』 제141집.
- 조은영 외, 2020, “육군 내적가치 교육의 설계방향 고찰”, 『정신전력연구』 제61호.
- 홍우람, 2020, “칸트 철학과 도덕 교육—벡(Beck)의 이중적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61집.

Berlin, I., 2002, “Two Concepts of Liberty”, *Liberty*, ed. Henry Har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저서>

권홍우, 2018, 『시민과 군인, 그 승리의 역사』, 국방정신전력원.

정태연, 2021, 『심리학 관점에서 본 무형전력』, 국방정신전력원.

Habermas, J., 장춘익 역,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제2권, 나남.

Hegel, G. W. F., 1986, *Nürnberg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1817*,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and 4, hrsg.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 Frankfurt: Suhrkamp.

Hegel, G. W. F., 1986a,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and 7, hrsg.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 Frankfurt: Suhrkamp.

Hegel, G. W. F., 1986b,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Dritter Teil. Die Philosoph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and 10, hrsg.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 Frankfurt: Suhrkamp.

Hegel, G. W. F., 임석진 역, 2008, 『법철학』, 한길사.

Honneth, A., 이행남 역, 2017, 『비규정성의 고통: 헤겔의 『법철학』을 되살려내기』, 그린비.

Huntington, S. P., 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 New York: Belknap Press.

Kant, I., 1902ff, *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Königliche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Vieweg, K., 정대성 역, 2019, 『자유란 무엇인가: 헤겔 법철학과 현대』, 길.

<기타>

국방부, 2019,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육군본부, 2018, 『내적가치 함양! 위국헌신의 참다운 육군』, 육군본부.

(Abstract)

Enhancement of Mental Force through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Liberal-democratic Values

Kim, Ju-yong

Recently, mental strength education requires to change in a way that establishes a military value system suitable for a liberal democracy while facing the need to strengthen mental strength in response to unpredictable security situations. The key to fulfilling these twofold objectives lies in the fact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nhancement of a soldier's democratic awareness and intangible force. Therefor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mphasize the concept of 'citizen in uniform' as one of the central military values. However, this concept has one problem before its use in military mental strength in which the orders of the military status and the orders of the civic seem heterogeneous and even conflicting.

This study aims to dissolve the internal tension of this concept through a new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citizens in uniform, freedom, people and state, thereby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for establishing new military values and enhancement of mental force. To this end, it examines the expla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regarding these concepts first and diagnoses its several problems (II). The current curriculum presents a brief explanation of the compatibility of civil rights and military obligations but does not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A new understanding of them is possible by introducing Hegelian insights in Philosophy of Rights (III). From Hegel's point of view, freedom is not the mere absence of coercion but a capacity for self-determination. Freedom is difficult to realize wholly at the level of an isolated individual, and it calls for an ethical community to give it a specific form. A state that is the best entity in humanity is the supreme unit that defines individual freedom and identity. Then it naturally derives that national defense is one of the supreme mis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freedom and identity of its people.

A re-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based on these insights can conceptually re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 and even strengthen its arguments (IV). The state and the people are in a more essential correlation than previously depicted, and liberal democratic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welfare are proved as constitutive of a state itself. The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which the current textbook attempts to prove, also becomes transparent. Finally, military duties do not conceptually conflict with civil freedom but are considered as a form of it.

Key words : Citizens in Uniform, Hegel, Freedom, Ethical Life, State

논문투고일 : 2021. 11. 24. 심사완료일 : 2022. 01. 18. 게재확정일 : 2022. 01. 24.